

May
2025

NEWSLETTER

산업기술팀 | Industrial Technology Team

CONTACT



변호사 구대훈
T: 02.772.4805
E: koo@leeko.com



변호사 김홍선
T: 02.772.4417
E: hongseon.kim@leeko.com



변호사 박지혜
T: 02.772.4804
E: jihye.park@leeko.com



변호사 김성훈
T: 02.6386.6689
E: sunghoon.kim@leeko.com



고문 임채민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2025. 5. 2. 국회(임시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의원안(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발의되었고, 2025. 5. 7.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기존 안보심의제도의 근거와 체계를 정비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외국인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포함됨 (제4조 제6항 신설, 제5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6개 항목(방위산업물자, 대외무역법 상 수출허가 대상 물품, 국가기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투자로서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투자 (**안보심의대상투자**)에 대하여 안보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안보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안보심의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4조 제6항은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국내법인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법인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도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개정안 제5조 제1항).



고문 **한진현**

T: 02.6386.0770

E: jinyun.han@leeko.com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T: 02.772.4278

E: sanghyo.kim@leeko.com

■ 안보심의대상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화 (제5조 제2항 개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등은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법 제5조 제2항 각호). 이번 개정안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를 추가하여, 상기와 같은 사후신고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안보심의대상투자자에 해당하면 사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보심의의 이행강제력 제고(제21조 제5항 제3호, 제34조, 제35조 개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심을 받지 않고 국내법인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5항 제3호).

한편, (i)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의로 신고·등록(변경신고·변경등록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및 (ii) 안보심의 이전에 국내법인등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ii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보심의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인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제반 규정 정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신설, 제5항 개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개정).

그 외,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개정안 제5조 제3항).

2. 시사점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안보심의회와 관련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안보심의회 대상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보심의회 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사전)신고 및 안보심의회 전 주식 취득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정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이후 동 국내법인을 통해 M&A를 추진하는 구조라도 안보심의회대상투자자에 해당될 수 있고, 안보심의회대상투자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외국인투자신고를 누락하거나 외국인투자신고시 안보심의회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의로 누락하여 안보심의회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안보심의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에 포함되는 간접투자 방식의 범위와 안보심의회 대상 및 심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관련 논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운용 방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및 안보심의회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